

한강 매점 운영·관리 현황

우리시에 귀속되는 매점시설물에 대해 안전시설 보강공사, 신규 사업자 선정 등을 실시하여 매점운영을 정상화 하고자 함.

□ 추진방향

- 계약만료 매점(11개소) 시설물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
- 신규 운영자 선정을 통해 매점운영 정상화
- 계약위반자 후속조치 이행(손해배상소송)

□ 현 황

- 현황 : 11개 공원 29개소(운영계약 종료일 기준)

운 영 자	합 계	2016년				2017년	2018년	비 고
		소계	2.4	5.1	5.8	11.2	8.15	
합 계	29개소	16	9	5	2	11	2	
① 미 운영 한 드 림 2 4 (미 니 스톱)	11개소					11		계약종료, 시설물 인수완료,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 예정
②서울시 귀속 정 상 운 영 한강체인본부 (코리아세븐)	14개소	14	7	5			2	정상 영업중
대한민국상이군경회	4개소	4	2		2			수의계약 체결('17.1.1., 3년)

※ 계약내용 : 매점사업자가 시설물을 건립하여 일정기간(8년) 운영후 서울시에 귀속

○ (주)한드림이십사 운영매점 추진 현황

- (주)한드림이십사·한국미니스톱(주) 컨소시엄에서 운영하던 한강매점 11개소는 '18.11.1.자로 시설물을 서울시에 귀속완료. 현재 공실상태임, 임시 매점을 3개지역 4개소를 운영하고 있음
- 계약기간 : '09.11.3.~'17.11.2. / 무단점유 기간 : '17.11.3.~'18.11.1.
-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: 2개월('18.10.30.~12.30.)
- 손해배상 소송 : 우선 200백만원 청구, 낙찰가가 정해진 후 소송가액 변경 신청 예정 ※ 진행사항 : 피고 답변서 제출('19.1.30.)

※ 겨울철 시민불편해소를 위해 3개지역 4개소의 임시매점 운영

- 임시매점 운영지역 : 여의도 1호점, 여의도2호점, 뚝섬2호점, 반포1호점

□ 수의계약 추진사유

○ 3.1운동 100주년,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독립유공자와 그 자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한강매점 2개소를 수의계약 체결하여 조금이라도 생계에 도움이 되는 조치 필요

○ 근거

- 공유재산법 제20조 제2항 :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시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,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.
-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: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수의(隨意) 계약으로 사용·수익허가 가능
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2(생업지원) :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, 사무용품,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·결정된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.

□ 향후계획

- 수의계약은 독립유공자와 3월초까지 완료하고, 일반입찰 공고하여 3월말~4월초까지는 매점이 정상운영 되도록 조치하겠음
- 수의계약(2개소) : 일반입찰 이전(3월초)
- 일반입찰(9개소) : 약 15일 소요, 수의계약 이후 낙찰자 선정(3월중순)